

◆ 회사소개

회사개요

업체명	(주)대한실업	업종	제조(재생원료, 재활용제품)
사업자 번호	514-81-38284	주 소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72길 82 (갈산동)
제조 공장	성주지점	주 소	경북 성주군 벽진면 문덕로 112
사업자 번호	510-85-04892	전 화	054)931-3452, 3462

회사연혁

2000-2002

2000.08 대한실업 설립 (대구 달서구 월암동)
2000.09 법인전환 (자본금 200 백만원)
2002.05 대구 달서구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탁처리
2002.07 학상공단 내 칠곡공장 가동

2003-2006

2003.08 성서공단 내 대구공장 가동
2004.12 자본금 증자 (700 백만원)
2006.06 한국환경자원공사 기술공모 업체 선정
2006.06 대구 서구청 재활용 민간위탁 업체 선정

2008-2011

2008.10 제주공장 가동
2010.11 지식경제부장관 표창
2011.03 모범납세자 표창
2011.11 벤처기업 인증

2012-2014

2012.06 한국환경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처리 사업자 선정
2013.04 논두렁보호구 GR(우수재활용제품) 인증
2014.06 한국환경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처리 위탁사업자 선정

◆ 기존 논두렁의 문제점

-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논두렁 조성이 어렵다.
- 장마 등 우천으로 인한 월류시 쉽게 무너진다.
- 수밀성이 낮아 자연 누수가 많아 물 관리가 어렵다.
- 잡초제거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초제를 뿌릴 경우 농작물, 인체, 가축 등에 피해를 준다.
- 병충해 방지를 위한 논두렁 태우기로 산불위험이 있다.



충청투데이

총 > 뉴스 > 충남 > 연기군

연기 논두렁 조성기 지원

2004년 02월 09일 (월)

유인준 기자 yyj8000@cctoday.co.kr

연기군이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논두렁조성기 지원 등 농가 지원대책을 제시해 농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군은 내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수리불완전답의 봄철 논물 기우기와 효율적인 용수 관리를 위해 논두렁조성기 20대를 공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. <사진>

지금까지 거의 모든 농작업이 기계화됐으니 논두렁 조성만은 인력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.



▲ 논두렁 조성기 사용 모습

그러나 금년부터 군에서 논두렁조성기를 공급함으로써 고령화, 부녀화된 농촌의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논두렁조성기 공급은 휴경으로 인한 여름철 논두렁 무너짐 현상을 맹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© 충청투데이(<http://www.cctoday.co.kr>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| 저작권은



◆ 제품 설명

제품의 명칭

- 재활용플라스틱 논두렁보호구
(Recycled Plastics footpath cover between rice—field)
- 규격 및 물품분류(목록)번호 : LDR-1000 30131596(2203659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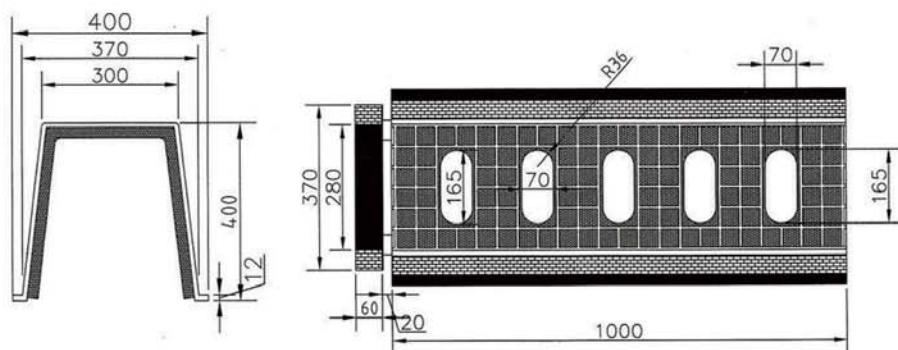
제품의 재질

- 재활용플라스틱 : 농촌 비닐하우스 등 사용하고 난 후 버려지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녹색제품

제품의 규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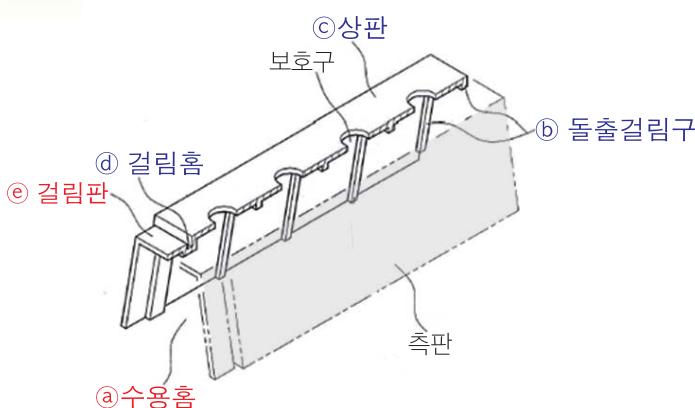
- 1000mm(L) x 400mm(H) x 300mm(W1) x 400mm(W2)

논두렁보호구 도면



◆ 제품의 특성

제품의 특허기술



〈 재활용플라스틱 논두렁 보호구 단면도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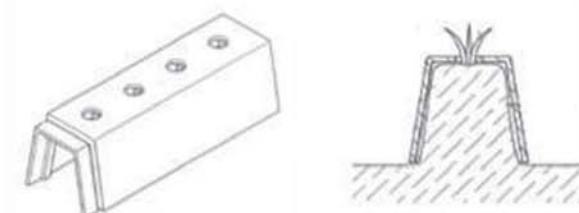


■ 연속배열 되는 논두렁보호구의 탈부착

■ 청구범위 (청구항 1,2)

논두렁을 수용하는 ①수용-홈을 마련하고 상판과 양측으로 측판에 경사지게 일체로 형성하고 ②수용-홈의 일단에는 ③돌출걸림구를 ④수용-홈의 내주연을 따라 형성하고 연속배열하여 다른 보호구의 ⑤돌출걸림구와 ⑥상판을 수용하는 ⑦걸림홈과 ⑧걸림판을 몸체의 외주연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한다.

■ 재활용플라스틱 논두렁보호구



특허기술 [제 10-1001594호]

명칭 : 논두렁 보호구



특허내용

논두렁 보호구에 관한 것으로서, 논두렁의 외부에 씌어주어 논두렁이 무너져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보호하기 위함과 동시에 논두렁의 표면에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함

• 적용기술

- 1) 보호구 사용으로 인한 토양 고정시키는 효과
- 2) 보호구를 일정하게 배열 안착시킴과 동시에 우천시 원활하게 표면이 노출되어 장착된 보호구 내부의 경우 수밀성이 유지됨.
- 3) 논두렁 표면에 식물재배 가능

◆ 제품의 다른 기술 적용

디자인

재활용 플라스틱 논두렁 보호구

디자인등록증(30-0739620) 논두렁 보호구

디자인적으로 자체 함몰로 인한 유실이 없음
미끄럼방지홀으로 도보 시 미끄러지지 않음(안전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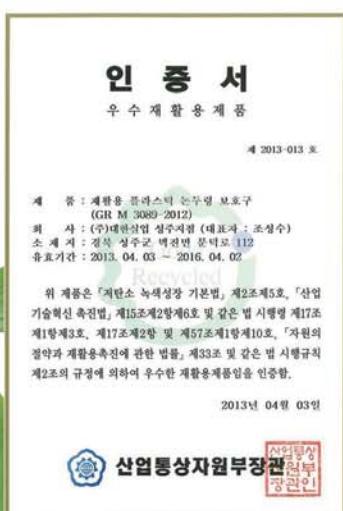
등록디자인 내용

■ 적용디자인 (1,2항)

- 재질 : 합성수지
- 구조 : 토양을 고정시키도록 논두렁 수용홀을 마련하고 몸체의 타측에는 연속배열하는 다른보호구의 걸림구를 수용하는 걸림홀과 걸림판을 형성함 → **유실방지**
- 상면에 미끄럼방지홀이 있어, 물로 인한 미끄러움 방지홀 형성



GR M 3089 (우수재활용제품 : 친환경녹색제품)



GR(Good Recycle)
정부가 인증한 재활용품의 품질, 친환경성.
재활용품에 대한 신뢰도 상승

-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(GR M 3089)
농촌폐비닐을 원료로 사용한 친환경 논두렁 보호구
- 열가소성수지인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질량기준으로 원료의 60%이상 사용하여 자원재활용과 생태계 보호

GR인증 [GR M 3089] 재활용 플라스틱 논두렁 보호구

- 1) 파손 방지를 위해 씌어놓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비닐을 원료로 사용한 친환경 논두렁 보호구
- 2)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며 무겁지 않다.

◆ 제품의 특장점

경제성 · 안정성 · 품질성

- 기존의 콘크리트 제품은 무거워 공사비가 많이 들며, 농촌 경관훼손 및 파손시 보수유지비가 많이 듈다. 그러나 본 제품은 무게가 가벼워 시공이 편리하고 파손시 교체가 쉬워 경제적이며, 미관상 보기 좋다.
- 제품 상면부는 영농 및 우기시 이동로 기능이 탁월하다.
(미끄럼방지 흠 제작 : 디자인 등록)
- 흙수로 인한 논두렁 월류시에도 단면현상 유지로 안정성확보

유지관리 및 친환경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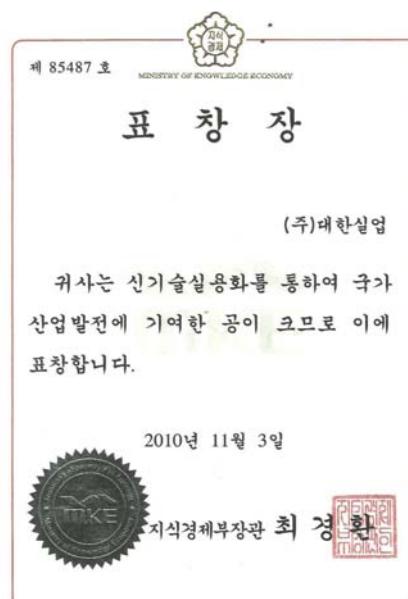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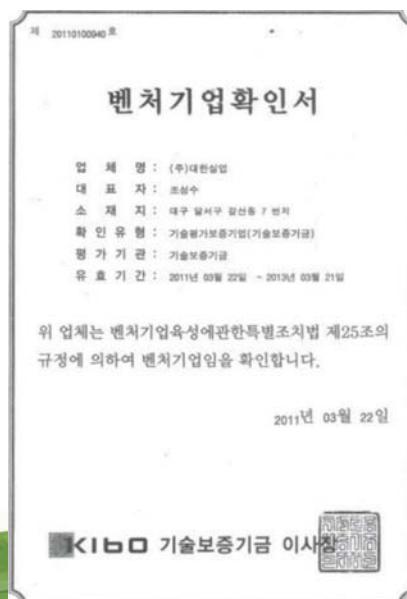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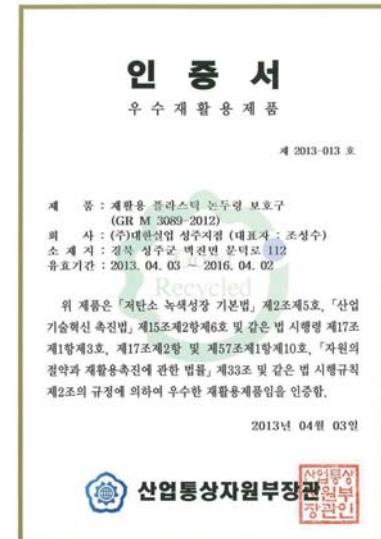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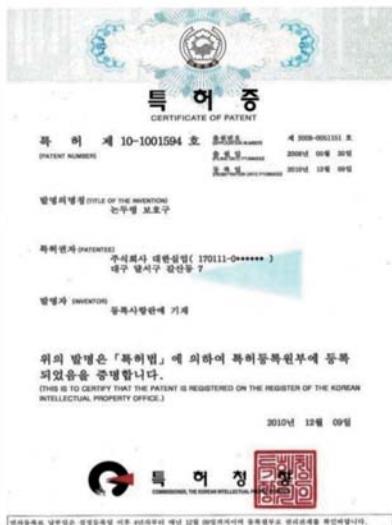
- 논두렁 누수저감으로 담수능력 제고
- 용배수로부 잡초번성 억제로 유지관리 편리성
- 논두렁부 단면 보호기능으로 토사유실 방지
-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따른 논두렁 관리 어려움 해소
- 기계화 영농시 논두렁 유실에 따른 재조성애로 해소
- 잡초 제거를 위한 제초제 사용량 감소
(인간과 동식물에 대한 환경파괴 감소)
- 사용 후 버려지는 영농폐비닐을 재활용한 친환경녹색제품
(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2014.9.23 개정)

기타

- 논두렁 상면 다수의 통공으로 콩 등 작물식재 및 토양통기성 확보
- 토공 논두렁 저폭 평균90cm이나 본 제품은 40cm로 실 경작면적 증가
- 용 배수 인접 국 · 공유지의 경계선 확보로 자산관리 용이
- 논두렁 태우기에 따른 산불발생 저감
- 돌출 걸림홈으로 탈 부착이 용이(실용성 증대)하며, 시공 후 콘크리트 제품보다 녹색농촌다움 및 미관상 어울림.
- 콘크리트로 조성된 경우 기계화 영농시 농기계 파손이 잦으나 본 제품은 파손부분 교체가 용이



◆ 제품의 인증



◆ 현장설치의 예





보도자료			
보도일시		2014년 1월 13일(월) 조간(1. 12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담당부서	환경정책관실 환경기술경제과	홍동곤 과장/ 김영주 사무관 044-201-6660 / 6669	
배포일시		2014. 1. 10.(금) / 총 3매	

공공기관 환경마크제품 구매 활성화 위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

◇ 공공기관 「녹색제품 구매촉진법」시행령 입법예고, 4월1일 시행

- 환경부(장관 윤성규)는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제품 의무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도를 올해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.
- 이번 제도의 도입은 일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책임자가 없어,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.
 -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르면,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 제품(GR마크) 등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※ '12년 864개 공공기관에서 1조7,290억원 제품구매(녹색제품 구매율은 31.3%)
- 환경부는 공공기관 구매담당관제도의 임무와 요건을 정하고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10일 입법예고를 했다.
- 이에 따라,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로 물품,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될 예정이다.
-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4종류의 임무를 맡게 된다.
 - 첫 번째로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구매 이행계획에 반영한다.
 - 두 번째로 해당기관과 소속·산하기관에서 구매한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구매 금액을 집계하고 구매이행계획과 비교하여 실적이 낮은 경우에 그 사유를 환경부에 제출한다.
 - 세번째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색제품의 기술개발·생산·판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·분석하여 해당기관과 소속·산하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.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4.9.25.] [대통령령 제25621호, 2014.9.24., 타법개정] 환경부(환경기술경제과), 044-201-6669

제8조(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)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7.31.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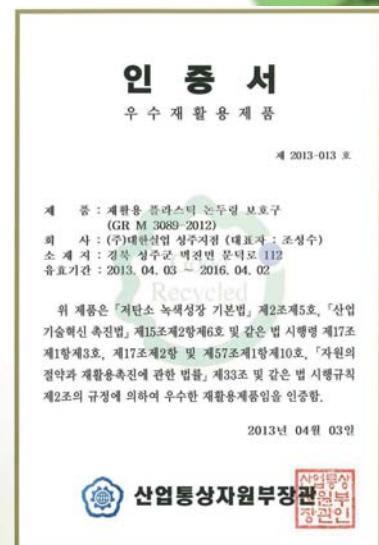
제8조의2(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)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
-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
-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
-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
- 녹색제품의 기술개발·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
-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인력 양성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

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.

- 국가기관: 「물품관리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
- 지방자치단체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: 물품,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

[본조신설 2014.3.18.]





(주)대한실업 성주지점

경북 성주군 벽진면 문덕로 112

Tel. 054)931-3452 Fax. 054)931-3453

<http://www.daehane.net>



『재활용 플라스틱』

논두렁 보호구



|주| 대한실업